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364
------------	------

2024년 3월 5일  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윤기섭 의원 외 52명

나. 제안일자 : 2023년 10월 1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24년 3월 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윤기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「교통안전법」의 개정으로 단지내도로 범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면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.

## 나. 주요골자

- 시장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6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3. 10. 26. ~ 2023. 10. 30.

-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<sup>1)</sup>

-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단

---

1) 교통운영과-16578호(2023.11.07.)

지내도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 
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 
동의함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“「교통안전법」(이하 ‘법’)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※ 참고 : 단지내도로 정의

관련 법령	내용
「교통안전법」 제2조(정의)	10.“단지내도로”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의2(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)	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</u> 1. 차도 2. 보도 3. 자전거도로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하는 단지내도로<sup>2)</sup>인 공동주택단지 등

2) 「교통안전법」 제2조(정의) 10. “단지내도로”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의2(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)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「공동주택

의 보도 등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시장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- 현행 조례에서는 법에 따라 서울시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<sup>3)</sup>로 주거지를 비롯한 학교지역 등에 대해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안전이 보호되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
  
- 또한, 법 제57조의3제7항<sup>4)</sup>에서는 국가 등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

---

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차도 2. 보도 3. 자전거도로

- 3)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」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주거지·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특히 교통약자,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. ④ 시장은 소관 교통시설의 설치·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 ⑤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3.25.>
- 4) 「교통안전법」 제57조의3(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) ⑦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○ 참고로 '19년도 법 개정<sup>5)</sup>으로 단지내도로에 대한 정의와 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서울시도 지난 '21년 '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서울시 지원방안 계획'<sup>6)</sup>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의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지원금 분담비율(시 30% : 구 30% : 입주자 40%)을 마련한 만큼 동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○ 한편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단지내도로<sup>7)</sup>의 범위는 현재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<sup>8)</sup>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의미하고 최근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<sup>9)</sup>에 따른 각

5) 「교통안전법」 [시행 2020. 11. 27.] [법률 제16629호, 2019. 11. 2. 일부개정]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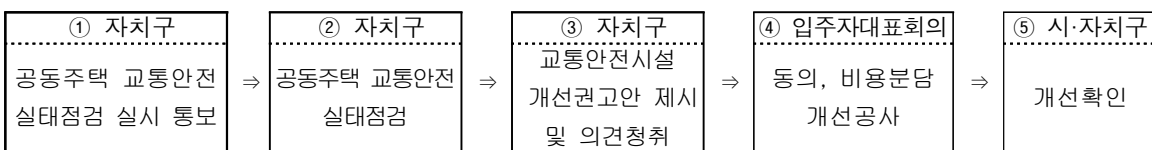
10. "단지내도로"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에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6) '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보완사업비 서울시 지원방안 검토 보고' 교통운영과-17247(2021.12.6.)

▶ 추진절차



▶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원금 분담 비율 \_ 시(30%) : 구(30%) : 입주자대표회의(40%)

7) 「교통안전법」 제2조(정의) 10. "단지내도로"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의2(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)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차도 2. 보도 3. 자전거도로

8)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. "공동주택단지"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.

9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1. 대학 2. 산업대학 3. 교육대학 4. 전문대학 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"원

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도 단지내도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 
이 개정<sup>10)</sup>(시행 '24.8.17.) 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
도 필요할 것임

---

격대학”이라 한다) 6. 기술대학 7. 각종학교

10) 「교통안전법」 [법률 제19673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 [시행 2024. 8. 17.]

<개정이유 및 주요내용> 이 법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도록 하고,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고령자, 어린이 등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

<부칙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0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-이하 생략-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

#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기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6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윤기섭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 
김경훈, 김성준, 김영옥,  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 
김원중, 김재진, 김종길,  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 
남궁역, 문성호, 박상혁,  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 
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 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 
유만희, 유정인, 윤영희,  
이경숙, 이민석, 이병윤,  
이봉준, 이상욱, 이승복,  
이종배, 이종태, 이희원,  
임규호, 장태용, 정지웅,  
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  
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5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「교통안전법」의 개정으로 단지내도로 범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면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.
- 이에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(안 제4호제6항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(1)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(2)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3)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5)비용추계 등의 자료 :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⑤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<u>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.</u>

문서번호

2023101300000014

## 미참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윤기섭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3.

회신일 : 2023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6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# 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 -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6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